

우리나라 포장 폐기물 관리정책

Policy package waste

이규만 / 환경부 폐기물 정책과 사무관

1. 서언

(Waste Management Hierarchy)상 최상위 정책이다.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정책의 하나인 포장폐기 물 발생억제 정책은 폐기물관리정책의 우선순위

선진국의 경우 폐기물관리정책의 중심이 원천적 감량화로 전환되고 있고 자원이 부족한 반면

[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구 분	제품의 종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식품류	가공식품	15%이하	2차이내
	음료	10%이하	1차이내
	주류	10%이하	2차이내
	제과류	20%이하	2차이하
	건강·기호식품	15%이하	2차이내
화장품류	화장품(세제류 포함)	10%이하	2차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이하	2차이내
	신변잡화류 (지갑·허리띠)	30%이하	2차이내
의약부외품	의약부외품	20%이하	2차이내
의류	와이셔츠·내의류	10%이하	1차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포함), 신변잡화류	25%이하	2차이내

(표 2) 폐기물처리부담금 부과대상 품목 및 요율

품 목	종 별 및 규 격	요 율
살충제 · 유독물제품	가. 살충제 ○ 500ml 이하 ○ 500ml 초과	개당 7원 개당 16원
	나. 유독물 용기 ○ 500ml 이하 ○ 500ml 초과	개당 6원 개당 11원
화장품	가. 유리병 ○ 300ml 이하 ○ 300ml 초과 300ml 이하 ○ 300ml 초과	개당 1원 개당 3원 개당 4.5원
	나. 금속용기 ○ 분사형 금속용기 ○ 기타 금속용기	개당 8원 개당 4원
	다. 플라스틱 용기 ○ 견본품에 한함	개당 0.7원
과자제품	○ 3가지 재료사용 복합재료 용기류 ○ 4가지 이상 재료사용 복합재료 용기류	개당 6원 개당 12원
합성수지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염화비닐수지(PVC) 등 ○ 폴리아세틴	판매가의 0.7% 판매가의 0.35%

국토 면적당 폐기물 부하량이 큰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할 때 최우선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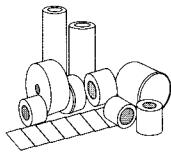
또한 양적 감량화 정책과 함께 유해성 감소 및 재활용성 제고 등 질적인 감량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전에는 재활용, 재사용이 용이한 유리, 종이포장재가 가벼운 합성수지재질로 바뀌어 무게기준으로는 발생량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양만큼 감량화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폐기물의 재질에 따라 환경영향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함으로써 폐기물의 성상 즉, 환경영향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적은 제품을 생산하고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2.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의 연혁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



포장과 환경

(표 3)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

대상제품 및 포장재	목 표 율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1년 이후
1. 계란난좌·팩	50%이상	60%이상	60%이상	80%이상	80%이상
2. 과일난좌	5%이상	5%이상	15%이상	15%이상	60%이상
3. 컵라면 용기	-	-	10%이상	10%이상	60%이상
4. 화장품류, 선물셋트 등의 받침접시류	30%이상	40%이상	40%이상	60%이상	60%이상
5. 기타 제품에 사용 되는 포장재	-	-	-	-	60%이상

과 국민복지환경에 이바지하고자 '92.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에 포장폐기물 관리를 위한 근거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3. 8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식품류(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잡화류(화장품류, 세제류, 인형·완구류), 종합제품 등의 포장공간비율(10~35%)과 포장횟수(1~2차) 등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인형·완구류, 종합제품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 및 폴리비닐크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코팅이나 라미네이팅한 포장재의

사용을 규제 하였으며 포장용기 재사용제품(Repill 제품)의 생산 권고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95. 2월에는 동 규칙을 개정하여 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9. 2월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식품류, 화장품류, 선물셋트, 등 총전 8개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규제해 왔다.

그러다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허리띠), 의약부외품 및 의류까지 확대하였고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수축포장재의 규제근거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표 4)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

연 도		1998~1999년	2000~2001년	2002년 이후
목표율	대기업	10%이상	30%이상	50%이상
	중소기업	10%이상	20%이상	30%이상

(표 5) 리필제품 생산권고율

대상제품	종전	개정
색조화장품	5%	10%
액체·분말세제류	5%	50%
샴푸·린스, 물티슈	-	20%
분말커피, 크레용·물감	-	10%

3. 우리나라의 포장폐기물 관리대책

3-1. 포장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식품류, 화장품류, 선물셋트 등 12개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포장공간비율(10~35%)과 포장횟수(1~2차)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관리상 문제를 초래하는 원료·제품의 제조자 등에 대하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충제·유독물·화장품·과자 제품의 포장용기의 경우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자·수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합성수지에 대하여는 원료에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3-2.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합성수지폐기물은 서로 다른 종류가 섞이면 재활용이 곤란하여 재활용을 위해서는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야 하나 기계선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력선별도 인건비가 많이 들고 부피가 커서 물류비가 많이 드는 등 경제성이 떨어져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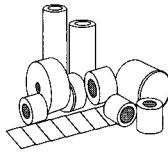
이에 합성수지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합성수지 포장재를 연차별로 감량화 하도록 의무부여하고, 식품포장용 반침접시(계란난좌·팩, 과일반침), 컵라면 용기, 종합제품의 받침 접시 등에 대하여 합성수지 포장재를 연차적으로 감량화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 분리가 곤란하여 재활용을 저해하고 소각시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PVC재질의 코팅(도포), 라미네이팅(접합)을 규제하고 2001. 1. 1부터는 포장용기의 라벨 등에 많이 쓰이는 PVC 수축포장재도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완구·인형 및 종합제품에는 스티로폼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용적이 30,000cm³이상인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컴퓨터 등 6개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 완충재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감량화토록 하고 있다.

다 쓴 포장용기에 내용물을 채워 용기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리필제품 생산을 권장하고 색조화장품, 세제류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해당제품 총 생산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생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 등에 대하여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하



포장과 환경

[표 6] 폐기물 예치금 부과대상 품목 및 요율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 율
음식주류 · 주류 · 의약 품 · 부탄가스 제품	가. 종이팩 ○ 250ml이하 ○ 250ml초과	개당 0.3원 개당 0.4원
	나. 금속캔 ○ 뚜껑부착형 ○ 뚜껑분리형 ○ 부탄가스용기	개당 2원 개당 5원 개당 5원
	다. 유리병 ○ 100ml이하(의약품에 한함) ○ 350ml이하 ○ 350ml초과	개당 1.5원 개당 2원 개당 3원
	라. PET병 ○ 500ml이하 ○ 350ml초과~1,500ml이하 ○ 1,500ml초과	개당 4원 개당 5.5원 개당 7원
세제류	가. PET병 ○ 500ml이하 ○ 350ml초과~1,500ml이하 ○ 1,500ml초과	개당 4원 개당 5.5원 개당 7원

고, 회수 · 처리시 반환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등 포장용기에 대하여 부과하여 포장폐기물의 회수 ·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3-3. 제도의 실효성

'99. 8월 9일부터 과대포장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 · 수입자에게 포장 전문 검사기관으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포장검사 명령제를 도입하였다.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업체 · 수입자는 20일 이내에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자비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기준 위반으로 확인되면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과대포장제품 적발이 용이해져 관련업체가 포장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과대포장지도 · 점검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제조업체 · 수입자로 하여금 제품포장의 곁면에 포장공간비율 · 포장재질 · 포장횟수 등을 표시도록 권장하여 업계로 하여금 제품 출시 전 포장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하여 포장폐기물의 자율적 감량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포장 · 환경친화포장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제고하였다.

종전에는 위반시 1차 권고를 한 후 6개월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과대포장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 곤란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대포장 제품의 생산·유통이 이행명령기간내에 자동적으로 완료된 경우도 있어 1차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및 2차 위반시 과태료(300만원이하)를 부과하고 포장검사명령을 미이행한 제조자·수입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맷음말

21세기의 환경문제는 “삶의 질”문제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의 문제, 즉 인간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 나라의 환경수준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로 말미암아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한 실정이며, 더욱이 폐기물 문제는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처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어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세계 각 국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자국내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포장은 일반상품과 달리 사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폐기물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포장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갖가지 규제 또는 기준이 선진국

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포장이 종전의 상품의 보호, 취급의 용이, 판매촉진 기능뿐만 아니라 환경적 기능 즉, 포장재의 양을 줄이고 유해성감소 및 재활용성을 높이도록 친환경 재질의 사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산업계에서도 환경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와 급변하는 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실용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포장재의 개발과 확산에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kol]

독자 설문 모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설문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835-9041

E-mail: kopac@chollian.net